

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(안)

의안
번호

556

제출년월일 : 1999. 7. 12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위탁사유

노인성 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노인요양시설을 경영의 합리화로 운영비 등 제경비를 절감케 하고 전문적 운영으로 경영의 효율성 도모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료효율을 증대키 위하여 위탁운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함.
-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 마련
-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확보 및 시설운영능력, 재정적 부담능력, 전문성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능력과 재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.
-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함.
- 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운영비지급 등 위탁조건 명시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(사무의 위임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(위탁운영)
-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(권한의 위임.위탁)
-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(위탁운영)

4. 본문 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(안)

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.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.
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.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
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.

□ 법적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(사무의 위임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중 조사.검사.검정.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.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.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(위탁운영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○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(권한의 위임.위탁)

보건복지부장관.시.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(위탁운영)

① 군수는 이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□ 노인요양시설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98. 4. 10 - '99. 7. 14
- 건축규모 : 건축면적:573.48㎡ (연면적:1,070.71㎡)
- 수용인원 : 50명
- 사업비 : 868,827천원

□ 노인요양시설 위탁(안)

○ 위탁대상 재산내역

시설명	기능	소재지	시설규모	비고
고성군노인 요양시설	-노인성질관동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입소 급식 및 요양 -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	고성읍 대독리 3-1번지	건축면적:573.48㎡ (연면적:1070.1㎡)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대지:2,900㎡	노유자 시설

○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

○ 수탁자의 자격(요건)

-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는
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

○ 선정기준

-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의 확보 및 시설운영
능력
- 법인 단체가 제출한 부동산 및 동산에 의한 재정적 부담능력
-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의 실적에 의한 책임능력, 공신력.(신뢰성,
장래성) 전문성 및 사무처리능력
- 기타 운영의 실현성, 전문성

○ 선정방법

-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평가표를 작성,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

○ 위탁 조건

- 위탁시설물의 무상사용
-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·운영비·사업비, 장비보강비 등은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국고보조기준에 의거 심사지급

○ 위.수탁 협약체결

- 위탁운영시설 및 사업, 위탁기간 등 명시
- 관리 및 운영방법, 위탁조건
- 보조금의 지급, 정산, 예산 및 결산승인
- 계약의 요건, 수탁재산의 반환
- 직원의 신분보장

□ 향후 위탁추진일정

- 수탁자 선정 : 7월중
- 위.수탁협약 체결 : 7월중
- 요양시설 개원 : 8월초